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마을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89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23.

다.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화도시 개념의 일반화 및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이에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써 ‘문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마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u>“문화마을”이란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육성, 마을 고유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
8. (생략) <u><신설></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8조의2(문화마을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마을단위로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마을단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마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문화마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5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8조²⁾는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지

1)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현재 문화도시는 2020년부터 매년 5~7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2023년까지 4차에 걸쳐 총 24개의 문화도시가 지정되었고, 이후 2024년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개편하여 13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4년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2025년부터 3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문화도시 지정·지원 현황]

사업명	지원기간	지정도시
1차 문화도시	2020~2024년	제주 서귀포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천안시(7곳)
2차 문화도시	2021~2025년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인천 부평구, 전북 완주군, 강원 강릉시(5곳)
3차 문화도시	2022~2026년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경남 밀양시, 경기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전북 익산시(6곳)
4차 문화도시	2023~2027년	전북 고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영월군, 울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칠곡군(6곳)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예정)	2025~2027년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 안성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속초시,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13곳)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지구는 서울 인사동, 대학로, 서초음악문화지구, 인천 개항장, 경기 헤이리,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까지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문화지구 지정 현황]

문화지구명	지정일시	지정사유	면적(㎡)
인사동	2002.4.24	인사동의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175,743
대학로	2004.5.8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문화 산실로서 대학로 보존, 지역 내 밀집한 (소)공연장의 보호 및 육성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연극창출,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지역발전 유도 및 지역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창출 및 문화공간화	446,569
헤이리	2009.2.6	지구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	505,891
인천 개항장	2010.2.1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의 자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경제활성화 및 한류해권의 대표적인 국제 개항문화체험도시로의 발전 도모	537,114
제주 저지문화 예술인마을	2010.3.8	저지예술인마을의 유지·보존과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25,100
서초음악 문화지구	2018.5.31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문화활동을 지원·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 도모	410,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육성, 마을 고유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문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마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을 육성함으로써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의 접근성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문화마을’은 지정요건이 현행법에 규정된 ‘문화지구’와 상당히 유사하고 지정권자에만 차이가 있으며, 현재 지정된 문화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사동, 헤이리,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 마을 단위로 문화지구가 지정된 사례가 있어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문화마을’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의 경우,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콘텐츠·프로그램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도시에 포함된 마을 단위의 문화 여건 개선도 함께 수반될 수 있어, ‘문화마을’의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지정·지원되고 있는 문화지구·문화도시 사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문화마을’의 신규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제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문화도시 사업으로도 마을 단위의 문화여건 개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화마을과 문화지구·문화도시 비교]

구분	문화마을(개정안)	문화지구	문화도시
목적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육성, 마을 단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촉진
지정 요건	1. 마을단위로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마을단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 문화시설,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 또는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및 지정 신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2. 조성계획 승인(문화부 장관) 및 예비사업 실시(지자체) 3.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외)·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의 처

02)6788-5379